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. 5. 30 선고 2018가단493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3. D

4. E

변 론 종결 2018. 5. 16

판 결선고 2018. 5. 30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상남도 산청군 F 대 139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1996. 4. 16. 접수 제530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적용 법조 : 자백간주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 전재혁

별지